

2026년도 근로지원인 지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근로지원인 지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I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 2026. 8. 1. ~ 8. 31. (1개월)

□ 신고대상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지원결정은 받은 장애인근로자 또는 사업주
- 근로지원인을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 또는 사업주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지원인

□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제사항

-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은 날부터 8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장애인 또는 근로지원인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면제
-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은 날부터 8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장애인 또는 사업주에 대해 서비스 제공 중단기간을 1년에서 3분의 1로 감경
-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수급금과 제재부가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형사고발 면제

□ 신고방법 :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별지 서식 참조)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고 및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1588-1519)

II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사항

□ 근로지원인 지원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부가금징수, 지원결정 취소, 서비스 제공 중단,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이익금의 5배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이익금의 3배액
3.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부정이익금의 2배액

○ 결정취소 및 서비스 제공 중단

1.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지원결정은 받은 경우, 해당 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중단
2.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지원인 등이 근로지원인을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또는 참여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또는 참여 중단
3.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 회수